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2013. 1. 23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2013. 7. 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등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1)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 관련 조항 규정(안 제8조)
 - 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나) 협의회 10명 이내 → 9명 이내
 - 다) 위원회 구성
 - (1) 구미지역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 (2) 구미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 (3) 구미시지역의 소비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구미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
 - (4) 구미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절차 등 정비(안 제13조~제14조)

-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
-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3) 그 밖에 등록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등 상위법 개정조항 반영 (안 제14조의2)

- 1) 영업시간 제한 등 예외대상 조건 개정
농수산물 판매액 비중 51퍼센트 이상 → 55퍼센트 이상
- 2) 영업시간 제한범위 개정
오전 0시 ~ 오전 8시 이내 → 오전 0시 ~ 오전 10시 이내
- 3) 의무휴업일 지정범위 개정
매월 2일 이내 → 매월 공휴일 중 이틀
(※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지정가능)

○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정비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규제 적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 1. 23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요건 강화, 영업제한의 범위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 주요내용은,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협의회 구성원을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소비자 및 주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로 구성 및,
 -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절차 등을 정비하고,
 -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등 상위법 개정조항과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대규모 점포,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유통업간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